

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177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교통공사는 차량기지 내 여유부지에 택배분류장으로 조성·운영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
- 나.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택배 등 도심생활물류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부족하여 우리시 외곽에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것임
- 다. 해당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국토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으로 선정 및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지방비 지원분을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교통공사
- 관련법령 : 지방공기업법 제49조

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추정 대상 사업 : 지축 도시철도차량기지 내 택배분류장 조성

※ 주요사업 : 택배분류장 및 물류처리시설 조성

- 자동분류, 상·하역 데크, 보관창고, 주차장, 관리사무소 등

다. 출자의 필요성

- 비대면 경제활동증가로 전자상거래 등 생활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으나,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시의 물류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임

※ 경기도 대비, 우리시의 물류단지 및 창고수는 5% 수준

- 이로 인한 서울시 생활물류는 대부분 경기도 물류시설에서 소형화물차를 이용하여 우리시내로 장거리 배송되고 있음

※ 택배차량 1일 배송거리 7km증가 : 41km('15년) → 48km('19년)

- 따라서 지속 증가하게 되는 도심생활물류 처리를 위해 서울시 외곽에 택배분류장 등 물류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나, 서울교통공사 재정으로 신속한 추진이 어려워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추경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: 출자금 예산(안)

※ 작성자 : 택시물류과 물류지원팀 정용우 (☎2133-2332)

붙임

서울교통공사 출자금 추경예산(안)

가. 출자금 : 1,170,000천원 *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액 변경 가능

나. 대 상 : 지축 도시철도차량기지 내 공동물류센터조성

(단위 : 천원)

구 분(출자금)	'20년 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감	산출근거
지축도시철도차량기지 공동물류센터조성	1,170,000	0	1,170,000	- 지축차량기지내 공동택배 분류장 조성 1개소

※ 총 사업비 39억원 중 국비 30%(11.7억), 지방비 30%(11.7억), 교통공사
40%(15.6억) 분담